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 관계 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자본잠식·공시위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강화 등 퇴출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부칙 제2조제1항, 제54조제1항제12호)

- 상향조정 계획을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하고, 일시적인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도록 세부 산정기준 개선**

*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26.1월	'26.7월	'27.1월	'28.1월
기존 계획	40 → 150억원	-	150 → 200억원	200 → 300억원
조기화	-	150 → 200억원	200 → 300억원	-

** [기존] 관리종목(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 지정 후 90일 동안 “연속 10일”(+ 누적 30일) 기준 상회시 상장폐지되지 않고 복귀

[개선]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연속 45일”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제53조제1항제5호의2, 제54조제1항제13호)

- 증가 1,000원 미만을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 요건 충족 방식은 시가총액 미달 기준과 동일(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 이후 90일 이내에 “연속 45일”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30일 연속 증가 1,000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가 있었던 경우 형식 상장폐지
- 30일 연속 증가 1,000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1회 이상의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형식 상장폐지

□ 자본전액잠식·공시위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강화
(제56조제1항제12호·제17호의2)

- 반기보고서 자본전액잠식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신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서의 공시위반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조정하고, 별도로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

3. 참고사항

- 심사등 : (1) 리스크관리부 심사 완료(심사연번호 : 제26-51호)
(2) 시장감시본부 협의 완료(감시제도-341)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액면분할이나 액면병합”을 “주식분할이나 주식병합”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5호 본문 중 “한다”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주가 미달: 보통주식의 증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전 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제54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동안”을 “이내에”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를 “300억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주가 미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제53조제1항제5호 단서를 준용한다.

가. 제5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증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나. 제5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이 있었던 경우

다. 제5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1회 이상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7의2.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제72조제1항 단서 중 “발생 사유”를 “발생 사유, 제53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제53조제1항제5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제53조제1항제5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로 한다.

제73조제1항 단서 중 “제54조제1항제5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를 “제54조제1항제5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제54조제1항제6호의 자본전액잠식 사유, 제54조제1항제12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제54조제1항제1

3호의 주가 미달 사유”로 하고, “발생 사유”를 “발생 사유, 제56조제1항제17호의 자본잠식 사유, 제56조제1항제17호의2의 반기 자본전액잠식 사유”로 한다.

부칙 <제2440호, 2026.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가총액 미달 관련 적용례) ①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제53조제1항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12호의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다음 표에 따른 시가총액으로 적용한다.

적용기간	시가총액	비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50억원	종전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억원	-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5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53조제1항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 일수 산정은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 산정한다.

④ 제5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 일수 산정 방식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5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

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가 미달 관련 적용례) ① 제5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가 미달 일수는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날부터 그 일수를 산정한다.

②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인 경우는 제54조제1항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의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4조(반기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실질심사 관련 적용례) 제56조제1항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시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관련 적용례)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부과받은 벌점의 누계는 그 벌점의 3분의 2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6. ~ 13. (생략)

② ~ ⑧ (생략)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
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
다.

1. ~ 11. (생략)

12.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
액 미달로 제53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
으로 지정된 후 90일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
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 동
안 해당 보통주식의 시
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 이 경

-----.

5의2. 주가 미달: 보통주식
의 총가가 1,000원 미
만인 상태가 연속하
여 30일 동안 계속되
는 경우. 이 경우 전
호의 단서를 준용한
다.

6. ~ 1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1. ~ 11. (현행과 같음)

12. -----: -----

(-----
-----.

300억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
속되지-----. -----

주가
미달
관리종목
지정
기준
신설

우 제53조제1항제5호
단서를 준용한다.

가. 300억원 이상인 상태
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300억원 이상인 일수
가 30일 이상일 것

<신 설>

<신 설>

<신 설>

-----.

<삭 제>

<삭 제>

13. 주가 미달: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제53조제1항제5호 단서
를 준용한다.

가. 제53조제1항제5호의2
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
에 해당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나. 제53조제1항제5호의2
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
에 주식병합 또는 자
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완료한 경
우로서 해당 관리종목

주가
미달
형식
상장폐지
기준
신설

<신 설>

② ~ ⑤ (생략)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57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지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이 있었던 경우

다. 제5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의 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을 1회 이상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① --

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
식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
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 11. (생략)

12. 공시규정에 따라 별점
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별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별
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13. ~ 17. (생략)

<신설>

18. ~ 19. (생략)

② (생략)

제72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
식의 관리종목 지정)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하여는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10점 이상
이 되는 경우 또는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
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
반에 해당하는 경우

13. ~ 17. (현행과 같음)

17의2.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
인 경우

18. ~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
식의 관리종목 지정) ①

공시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
강화

반기
자본전액
잠식을
실질심사
사유로
신설

기업인수
목적회사
주식의
관리종목

법 위반 사유 중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 제56조제1항제6호의 주된 영업정지 사유, 제56조제1항제9호의 경영권 변동 등 사유, 제56조제1항제15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 제56조제1항제16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는 준용하지 않는다.

② (생략)

잠식 사유, 제54조제1항제12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제54조제1항제13호의 주가 미달 사유, -----

발생 사유, 제56조제1항제17호의 자본잠식 사유, 제56조제1항제17호의2의 반기 자본전액잠식 사유-----.

② (현행과 같음)